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0.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0. 23.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김해철 의원 등 8명
- 발의일자: 2025. 10. 2.(목)
- 회부일자: 2025. 10. 10.(금)
- 검토기간: 2025. 10. 10.(금) ~ 10. 17.(금)

2.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서구 실정에 부합하는 보훈문화 확산 시책의 수립·시행, 공훈선양사업, 조사·연구 지원 및 민간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공훈을 기리고, 구민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함양하여 지속적인 보훈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보훈발전계획 수립 근거(안 제4조)
- 라. 공훈선양사업 추진 근거(안 제5조)

마. 조사·연구 지원 근거(안 제6조)

바. 민간참여 촉진과 협력체계 및 자문(안 제7조~제8조)

사. 사업 위탁, 보조금 지원,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1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지역내 보훈문화 확산과 공훈선양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 추진 및 민간참여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 보훈문화 확산과 공훈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참여 여건 조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9조에서 법인·단체에 일부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리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단체(10개) 지원 및 보훈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애국정신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수립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조례 제정은 관련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 우리구 보훈단체 현황: 10개 단체, 19,086명

단 체 명	회원수(명)	단 체 명	회원수(명)
광복회	85	6.25참전유공자회	241
상이군경회	1,112	고엽제전우회	720
전몰군경 유족회	908	특수임무유공자회	24
전몰군경미망인회	192	월남전참전자회	1,026
무공수훈자회	1,494	재향군인회	13,284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

· 단체 등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명
8.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2. 생존 희생·공헌자 사망 시 장례 지원

제7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본인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 지급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훈수당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의3(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
2. 보훈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4(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